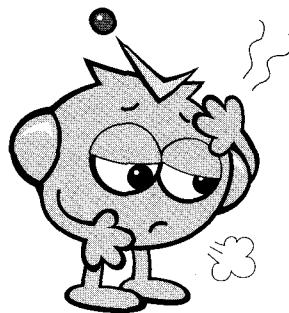


# 개정『농협법』의 주요 내용과 『농협법』 개정 운동의 성과



농협중앙회의 대 정치권 로비 공세 속에서 ‘누더기 개정안’이 되어버린 『농협법』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한농연 및 전 농업계는 우리 농업의 변화에 걸맞는 농협 개혁을 추구하려는 법 개정 정신이 퇴색되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의 개혁을 위한 조항들이 개정되거나 신설됨으로써, 향후 한농연의 농협 개혁운동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월간 한농연』에서는 이번에 개정된 『농협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농협법』 개정 운동의 성과는 무엇인지를 집중 분석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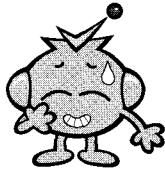
– 편집자주 –

## 농해수위 ‘농협법 개정안 공청회’…4대 쟁점 관련 공방 이어져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11월 29일 ‘농협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서정의 한농연중앙연합회장, 박용두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장태평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장, 노경상 농협중앙회 상무, 김병원 전남 나주 남평농협 조합장, 박진도 충남대학교 교수, 김완배 서울대학교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기존의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를 포함한 4대 핵심 쟁점에 대해 각 증인들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농해수위 의원들 또한 이를 4대 쟁점에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첫 진술자로 나선 장태평 국장은 “정부의 개정안은 중앙회 신경분리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못 박고 “다만 분리시한은 필요한 추가자본금이 얼마인지, 어떤 방법으로 추가 자본을 조달할 것인지 등의 세부 추진방안이 나와야 정확히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민단체들은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협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실질적인 개혁조치가 급선무라는 입장을 제기했다. 서정의 한농연중앙연합회장은 “조합원 실익



## ● 농협법 개정 관련 4대 쟁점

1. 경제사업 활성화와 조합원 실익증진을 위한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 문제
2. 회원조합 상임조합장의 2회 이상 연임 제한 규정 신설 문제
3. 시군관내에서 '1구역-1조합 원칙' 철폐 및 조합원의 자율 가입권 부여 문제
4. 회원조합 상임이사의 임기 설정 문제 (4년 혹은 2년)

증진을 위한 경제사업 활성화의 대원칙 속에 중앙회 신경분리가 추진돼야 하며, 신용사업의 감독권 한은 계속 농림부가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사업의 이익을 경제, 지도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임조합장 2회 연임 제한, 조합장 선거의 선관위 위탁, 1구역-1조합 원칙 철폐를 통한 조합원 선택권 부여 등의 개혁과제도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박웅두 전농 정책위원장은 중앙회 신경분리를 더욱 강력하게 주장하였는데, “1년 이내에 농협이 중앙회 신경분리 계획을 농림부에 제출토록 하여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2년 내에 신경 분리를 완료토록 규정할 것”을 주문했다.

반면 농협 관계자들은 신경분리 원칙은 찬성하면서도 각종 이유를 들어 당장 분리하는 것에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노경상 농협중앙회 상무는 “지금까지 누구도 중앙회 신경분리가 지금보다 농업인과 회원조합에게 더 많은 실익을 줄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한 바 없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노경상 상무는 또한 “중앙회 신용 및 경제사업을 분리할 경우 신용사업은 신인도 하락, 시너지 효과 상실 등으로 자체 경쟁력이 약화되고 경제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기피 등이 우려된다”면서 “신경분리는 전제조건인 자본금 확충, 경제사업 독자생존, 지도사업비 조달방안 및 기한, 중앙회와 회원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체제 대안 등이 먼저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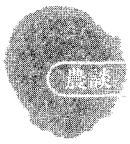
김병원 전남 나주시 남평농협조합장은 “중앙회 경제사업이 독립법인으로 분리될 경우 적자 해소와 독자 생존을 위해 조합에 대한 수수료 인상과 저리자금 지원 감축이 불가피하며 이는 결국 조합의 경제사업 위축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학계는 입장이 갈렸다. 박진도 충남대 경제무역학부 교수는 “신경분리는 농협중앙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열쇠”라고 강조한 반면 김완배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신경분리에 앞서 경제사업 효율화를 위한 일선조합간 합병, 신용과 경제사업간 인사교류 금지, 중앙회의 자회사간 중복기능의 정리 및 자회사의 통폐합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일부 의원은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를 강하게 요구한 반면 또 일부 의원들은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를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는 조합장 연임제한, 조합 구역중복 허용 등의 정부 개정안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 12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1구역-1조합 제도 폐지, 농협중앙회 지배구조 개선 조치 희석돼

11월 29일의 토론회를 통해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 일부 국회의원들의 농협법 개악 의도가 드러나면서 한농연 및 농업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



명한 바 있다. 하지만 12월 1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한농연 및 전 농업계의 합의를 통해 어렵게 마련한 농협법 개정안이 상당부분 변질되어 통과되었다. 농해수위의 농협법 개정안(대안)은 이른바 4대 개혁법안과 관련한 여야의 첨예한 대치 국면 속에서도 12월 7일의 법사위 회의와 9일의 본회의를 통해 일사천리로 통과되었다. 강기갑 의원 등 여야 31명의 의원들의 농협법 개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나 역부족이었고, 결국 농해수위를 통과한 농협법 개

정안(대안)이 통과된 것이다.

참고로 12월 9일에 개정된 농협법 개정안은 정부 및 농협중앙회의 세부적인 추진 계획이 수립된 이후 2005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국회 농해수위의 『농협법』 개정안(대안)의 작성 과정 속에서 △1구역-1조합 제도를 유지하고 △농협중앙회 대표이사 임기를 2년으로 축소하며 △농협중앙회 감사위원회 참여 조합장 정수를 1/2로 설정하는 등의 조항이 삽입되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조). 농

### ●『농협법』 국회 농해수위의 개정안 및 한농연 요구사항 비교표

#### - 농협중앙회 -

구 분	국회 농해수위 개정안	한농연 요구사항
이사회	지위	비상임
	집행간부-직원 인사권	대표이사 및 전무이사
	교育지원사업 수행 및 대 표이사간 이견 조정권	전무이사(신설)에 위임
	내부통제 회원조합 감사	조합감사위원장에 위임 준법감시인 신설
	내부통제기준-경영검사부	신규도입(이사회의 재의결권 보장, 교 육지원부문은 제외)
	사업부문별 소이사회	회장,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의 1/2 이상을 조합장
	이사구성	신설
	대표이사 해임 건의권	● 현 감사제도를 폐지 ●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 (조합장 이사 1/2)
	감사위원회	● 회원조합장 이사 : 4년 ● 대표이사, 전무이사, 사외이사 : 2년
	이사의 임기	조합원수에 따라 3표까지 부여, 대의원 선출시 적용
부가의결권	신용-경제간 직원 인사 교류	정관으로 정함
	중앙회 회원 가입	필요시 가입 거부 가능 (장관 승인을 얻은 경우)

협중앙회의 신경분리 관련 조항들은 당초 농림부의 『농협법』 개정안의 내용이 그대로 통과되었다. 하지만 농협중앙회가 그간 신경분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발표해 왔기 때문에, 신경분리 등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각종 조치들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농업계는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의 통과 과정을 보면서, 농업계 내외부에서는 회원조합 조합장과 농협중

려던 정부안마저도 농협 의견 중심으로 변질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농협 전문가들로부터 “농협중앙회와 조합장들이 국회를 대상으로 엄청난 로비를 펴 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말았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이번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농협중앙회는 전방위적인 정치권 로비를 펼쳤다. 특히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문제의 경우 정부안대로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한다

### - 회원조합 -

구 분	국회 농하수위 개정안	한농연 요구사항
책임경영체제	<p>상임이사 도입</p> <p>상임이사 선출 방법</p> <p>상임이사 임기</p> <p>조합장 연임 제한</p> <p>외부회계감사</p>	<p>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도입 의무화</p> <p>정관이 정하는 추천절차에 의한 추천, 총회에서 선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년으로 설정</li> <li>● 임기개시 후 2년차에 이사회에서 잔여 임기 계속 여부를 결정</li> </ul> <p>상임조합장 연임 2회로 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정규모 이상 조합은 조합장 임기 증 1회 수감</li> <li>● 기타 조합은 대의원 1/3의 청구로 임기중 1회 가능</li> </ul>
선거관리	<p>직선조합장 선거</p> <p>품목조합연합회 가입</p> <p>품목조합연합회</p> <p>자금 차입</p>	<p>선관위에 위탁</p> <p>지역조합 준회원 가입</p> <p>정부, 공공단체로부터도 자금 차입 가능</p>
경제사업 활성화	<p>경제사업법인</p> <p>배당순위</p> <p>동일법인에 대한 출자 제한</p> <p>선거권 제한</p>	<p>2 이상의 조합이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가능</p> <p>이용고 배당 우선</p> <p>중앙회에 대한 출자, 경제사업을 위한 현 물출자의 경우 자기자본 이내 가능</p> <p>가입 후 6개월 경과해야 함</p>
조합원 관리	경영참여권리확대	<p>회계장부 열람 청구, 총회의안 제안 등 3% 이상 조합원 청구시 가능</p> <p>합병의결정족수 1/2로 완화</p> <p>신규도입(의결권은 없고, 배당권만 부여)</p>
환영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도입(의결권은 없고, 배당권만 부여)</li> <li>● 배당률은 정기예금 금리 수준으로 제한</li> </ul>
우선출자제도		



대표·전무이사, 조합 상임이사)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상임조합장의 연임 제한 △지역농협 구역중복 허용 등 정부안에 대해서도 보완을 요구해 왔다. 특히 한국농어민신문은 11월 9일자 농협중앙회의 '정기국회 중 중점 추진사항 통보' 공문을 입수·보도하여 농협중앙회의 전방위적인 로비 사실을 증명하기도 했다.

이에 한농연은 12월 2일 성명서를 통해, 농민조합원의 요구와 배치되는 농협법 개악을 초래한 국회 농해수위와 농협중앙회를 규탄하였다. 특히 국회 농해수위가 농협중앙회의 이기주의적 공세에 밀려 농협법을 개악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하였으며, 농협법 개정 이외의 각종 개혁 과제를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 『농협법』 개정 운동의 성과는 무엇인가?

당초 한농연과 농업계 전체의 농협 개혁 의지를 반영하고자 노력했던 『농협법』이 상당 부분 개혁 의지가 실종된 것이 사실이다. 특히 농협중앙회 관련 개혁 방안들이 상당 부분 좌절되었다. 농협중앙회의 임직원 중심으로 짜여져 있던 농협의 지배구조를 회원조합과 조합원들의 손으로 돌려 주어, 경제사업 활성화와 조합원 실익 강화를 도모하려던 전 농업계의 염원과 노력이, 농협중앙회의 정치권 로비와 농해수위 의원들의 무소신속에서 상당 부분 관철되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회원조합의 개혁과 관련된 각종 조항들의 개정은 가시적인 진전을 보이기도 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직선조합장 선거의 지역선관위 위탁 조항과 상임조합장의 2회 이상 연임 제한 규정은 그대로 반영되었다. 일정 규모의 이상인 조합들은 반드시 상임이사를 두도록 하였고 조합장의

임기 중 1회 이상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였다.

조합원들의 경영참여 확대를 위한 개혁 조치들도 도입되었다. 회계장부 열람 청구, 총회의안 제안 등 3% 이상 조합원 청구시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품목조합연합회에 회원조합들이 준회원으로라도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기존의 지역 위주의 연합조직이 품목별로 더욱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조합의 합병 및 통폐합을 위한 의결정족수를 현행 2/3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조합원 실익 사업 중대와 조합의 건전 경영을 위한 규모화와 전문화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농협중앙회의 근본적인 개혁이 전제되지 않은 회원조합만의 개혁 추진은 절름발이의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이에 한농연은 농림부 내 농협개혁위원회 설치를 강력히 주장하여,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를 포함한 지배구조 개선과 총체적인 농협 개혁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제5기 농축협 조합장 선거를 통해 깊고 의식이 있으며 능력이 검증된 농업경영인 출신 조합장을 진출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농협법』 개정만으로 총체적인 농협 개혁이 완수되는 것이 아니다. 제도와 법령을 개정할 수 있어도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과 조직의 풍토가 바뀌지 않는다면 개혁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올초부터 근본적인 농협 개혁을 위한 경북 및 충북 지역 한농연 회원들의 줄기찬 노력은 각 조합들의 예결산 대의원총회를 통해 열매를 맺고 있다. 법적 제도적 개혁의 성과들을 더욱 확고하게 하기 위한 한농연 회원들의 단합된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한농연**